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
동의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74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최병희)

가. 제안사유

○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: 2024. 11. ~ 2025. 2.

○ 설치장소: 도청사 의회동 옆 민원인 주차장 내 3면

○ 사업비: 한전 전액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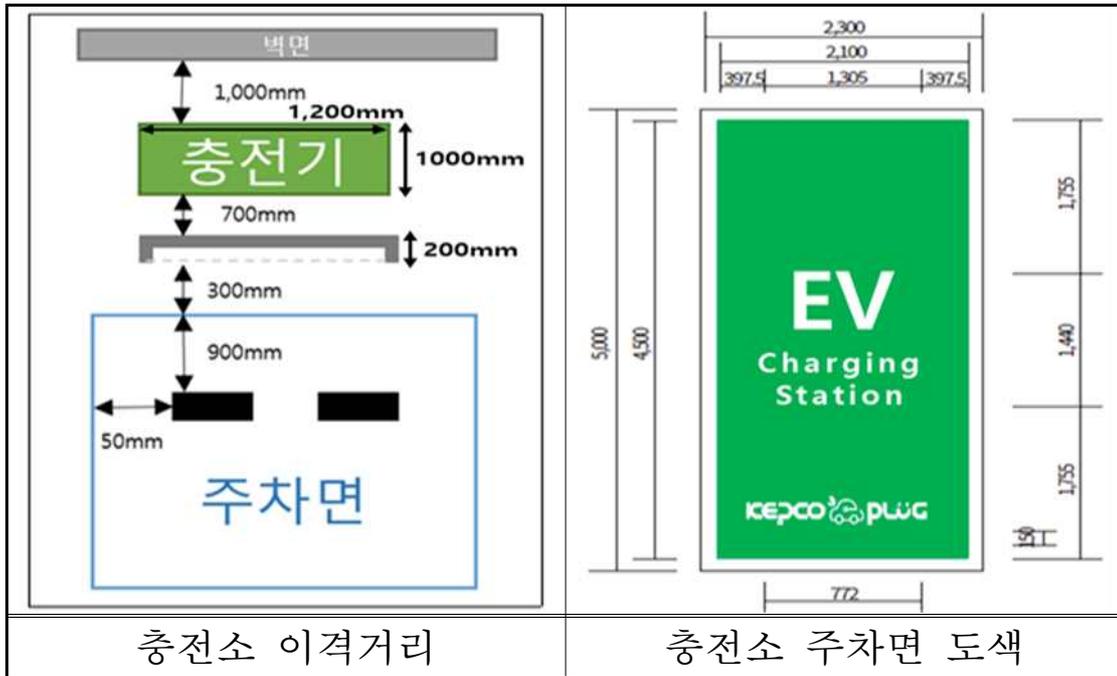
- 사업량: 급속충전기 3대(100kW 1대, 50kW 2대) 구축
- 수행기관: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(구축·설비 총괄 운영)
- 주요내용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□ 참고사항

- 2024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→도): 8. 16.
 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: 8~9월
- 2024년 공용전기차 공모 수요조사 제출(도→한전): 9. 2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안내(한전→도): 10. 28., 11. 12.
-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방안 협의(도↔한전): 10. 31.
-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: 2024. 11.~2025. 2.
 - 설계 및 점용허가(11~12월), 시공(1~2월)
 - 준공 및 서비스 시행(2025. 2.)
- 충전기 설치 예정지 현장사진(도청사)



○ 설치기준(한전)

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(분청)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시행하는 '24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충북도청 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.
- 본건 동의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 및 제21조(사용허가기간)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(사용허가의 방법)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급속충전기 총 3대(100kW 1대, 50kW 2대)를 충전소

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임.

-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충전소 부지(의회동 민원실 옆 주차장내 3면)만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것이며, 그 외 사용료,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본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및 전기차 확대 보급 기조에 부합하며, 민원인과 도청 공무원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충청도청 내 전기차 기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의 편의성 증대가 예상되며, 사업비 전액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므로,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」

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

의안 번호	77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1조3 제2항에 따라,
-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※ 한전 '24년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최종 선정('24.10.28., 11.12.)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4. 11. ~ '25. 2. ※ 사업비 : 한전 전액부담
- 설치장소 : 청사 민원인 주차장 내 3면
- 사업량 : 급속충전기 3대 구축(100kW 1대, 50kW 2대)
- 수행기관 :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※ 구축·설비 총괄 운영
- 주요내용 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3. 추진상황 및 계획

- '24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 → 도) : 8. 16.
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 : 8~9월
- '24년 공용전기차 공모 수요조사 제출(도 → 한전) : 9. 2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안내(한전 → 도) : 10. 28., 11.12
-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방안 협의(도 ↔ 한전) : 10. 31.
-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 : 11~'25.2월
- 설계 및 점용허가(11~12월), 시공(1~2월), 준공 및 서비스 시행(2월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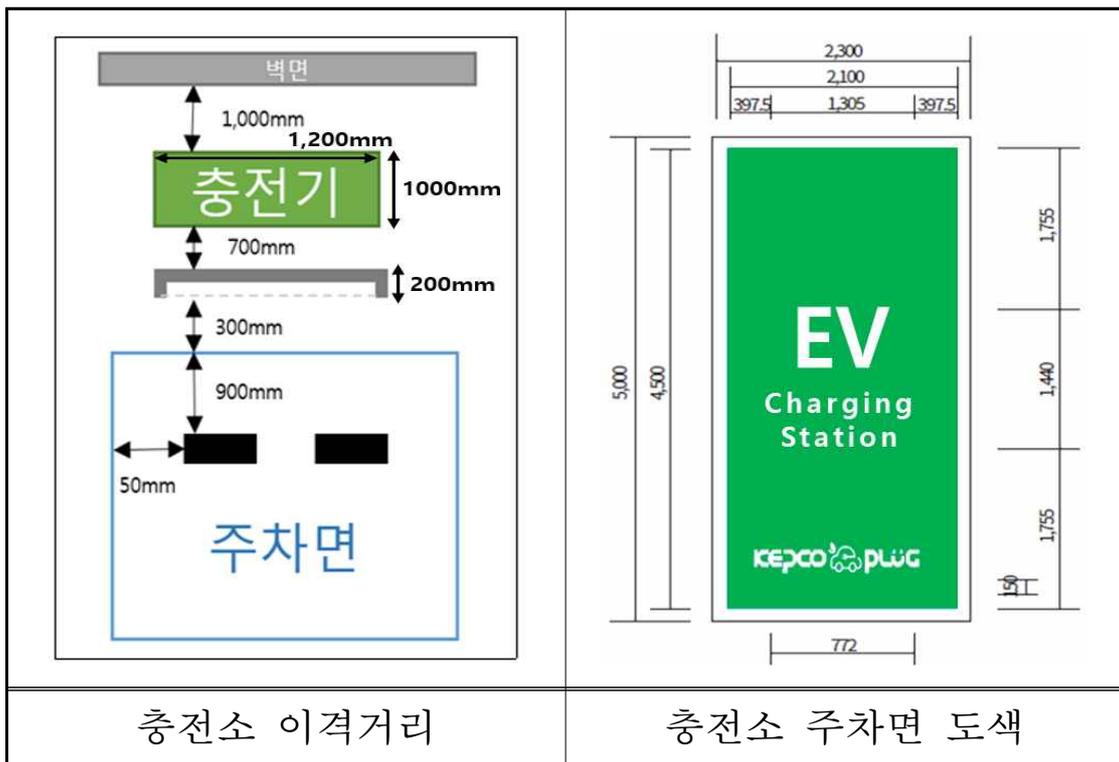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

5. 기타

○ 충전기 설치예정지 현장사진(도청사)



○ 설치기준(한전)



□ **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**
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